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0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1일

발 의 자 : 한기영, 오중석, 이승미, 이상훈,  
이성배, 이동현, 이병도, 이경선,  
김호평, 강동길, 문병훈, 추승우  
의원 (12명)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출자·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별도의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지방공사 및 공단의 근거법은 「지방공기업법」으로, 출자·출연 기관의 근거법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명확히 함(안 제4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3항제6호 중 “법 제146조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49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</u></p> <p>7. <u>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·출연법인의 임원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9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「지방공기업법」</u>----- -----</p> <p>7. <u>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